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상세설명자료**

2022. 11.

관계부처 합동

※ 동 자료는 체결일 기준(2022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각 조항별 소관 부처의 참여를 통해 작성되었음.

# Contents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상세설명자료

<b>I</b>	협정 개요	1
<b>II</b>	서문	3
<b>III</b>	본문	4
<b>IV</b>	부속서 가	6
	1. 일반 조항	7
	2. 디지털제품	9
	3. 디지털 무역 및 비즈니스 촉진	12
	4. 데이터	27
	5.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	34
	6. 디지털 경제의 개방과 혁신	43
	7. 기타 협력 및 대화	50
<b>V</b>	부속서 나	57
<b>VI</b>	부속서한	57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상세설명자료



# I 협정 개요

■ **(의의)**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최근 디지털전환 추세를 반영한 다양한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 기반을 합

- 싱가포르의 우리의 11위 교역 상대국이자 FTA 체결국으로, 아세안 중 디지털 분야에서 앞서 있는 디지털 허브 국가에 해당

※ 싱가포르는 2021년 IMD에서 발표한 디지털경쟁력평가IMD 세계 2위(韓 8위), WIPO 글로벌혁신지수 세계 8위(韓 5위)를 기록하였으며,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싱가포르-호주 디지털경제협정, 싱가포르-영국 디지털경제협정 등 디지털 통상협정 다수 체결

- 양국은 2020년 6월 협상 개시 선언 후, 10차례의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 협상을 거쳐 2021년 12월 협상 타결
  - 이후 양측간 조항별 법률 검토(legal scrubbing)를 거쳐 2022년 3월 협정문안(영문본)을 확정

■ **(주요 내용)** 본문, 부속서 가, 부속서 나, 부속서한으로 구성되며 부속서 가의 내용이 기존 한-싱가포르 FTA 제14장(전자상거래)을 대체

※ 기존 한-싱 FTA(2006년 발효) 전자상거래 챕터는 ▲정의, ▲적용범위,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디지털 제품 등 4개 조항으로 간략하게 구성됨

- ▲ 전자상거래 원활화, ▲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간 교역에 대한 무역 규범과 ▲ AI, ▲ 핀테크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

〈참고〉 한-싱가포르 DPA 분야별 주요 조항

분야	주요 조항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적전송 무관세, 전자인증·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 종이서류 없는 무역, 특송화물 등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국경간 정보이전 원활화, 컴퓨터설비 현지화 요구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금지, 인공지능(AI) 협력, 핀테크 협력, 디지털 경제에서의 표준 협력 등
온라인 소비자보호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소비자 보호, 스팸 메시지 규제, 사이버보안 등

- 우리 기체결 FTA의 전자상거래 챕터 대비 디지털 통상규범의 범위를 확대하고, 디지털 신기술에 관한 협력 조항을 포함

※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ICT 제품(제14.17조), 소스코드(제14.19조) 등 규범 및 인공지능(제14.28조), 핀테크(제14.29조), 디지털경제 표준(제14.31조) 등 협력 조항은 기체결 FTA에는 없는 조항들로, 한-싱가포르 DPA에서 최초로 규정

■ **(기대 효과)** 양국 간 무역과정 전자화,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 등을 통해 디지털 상품·서비스 교역을 활성화하고,

- 우리 중소·창업기업의 아세안 디지털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



## II

## 서문

- 기업과 소비자가 디지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 관계를 증진시킨다는 공동의 전망을 인식
- 디지털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역할, 데이터 이동 원활화의 중요성, 개방적이고 공정하고 신뢰 가능한 디지털 경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인식
- 데이터 이동을 원활히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한 소비자 및 기업의 신뢰를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
- 디지털 경제를 규율하는 규범과 양자 간 협력을 발전시킬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
- 세계무역기구(WTO) 및 디지털 경제에 관한 여타 협정과 약정에서의 양 당사국의 권리·의무 및 약속을 확인

### III

## 본문

### 1 목적 (제1조)

#### ■ 동 협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함

- 양국 간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경제 통합을 증진
-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효과적인 규제를 지원할 기준을 구축
- 양국 간 경제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신생 기술을 이용하고, 양국 기업 간 (B2B) 연계 및 연구 연계를 강화
- 디지털 무역과 관련한 다자 및 지역 포럼에서의 양 당사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확대

### 2 한국-싱가포르 FTA 개정 (제3조)

- 한-싱가포르 FTA 제14장(전자상거래)의 규정을 동 협정 부속서 가의 규정으로 대체
- 동 협정 발효일로부터 1년 안에 한-싱가포르 FTA 제9장(국경간 서비스 무역)과 제10장(투자) 및 각각의 부속서를 개정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



### 3 협력 (제4조)

-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양국 기업·연구자·학계의 협력 참여를 장려

### 4 발효 및 개정 (제5조, 제6조)

- 동 협정은 양 당사국이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의 교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
- 양 당사국 간 서면 합의에 의해 동 협정의 개정이 가능하며, 그러한 개정은 한-싱가포르 FTA 제22.4조(개정)에 따름

### 5 전자서명 (제7조)

- 양 당사국은 동 협정에 전자적으로 서명할 수 있으며, 그 전자 서명은 국제법상 조약의 수기서명과 동일한 중요성과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양해

# IV 부속서 가

대분류	순서	조항명
일반 조항	1	정의 (Definitions)
	2	범위 (Scope)
	3	정보의 공개 (Disclosure of Information)
	4	정보 공유 (Information Sharing)
디지털 제품	5	관세 (Customs Duties)
	6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디지털 무역 및 비즈니스 촉진	7	국내 전자거래 체계 (Domestic Electronic Transactions Framework)
	8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Electronic Authentication and Electronic Signatures)
	9	물류 (Logistics)
	10	전자송장 (Electronic Invoicing)
	11	전자지급 (Electronic Payments)
	12	종이서류 없는 무역 (Paperless Trading)
	13	특송화물 (Express Shipments)
데이터	14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15	컴퓨터 설비의 위치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16	금융서비스를 위한 컴퓨터 설비의 위치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for Financial Services)
	17	개인정보 보호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	18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제품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ducts that Use Cryptography)
	19	소스코드 (Source Code)
	20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
	21	온라인 소비자 보호 (Online Consumer Protection)
	22	사이버보안 협력 (Cybersecurity Cooperation)
	23	온라인 안전 및 보안 (Online Safety and Security)
디지털 경제의 개방과 혁신	24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Principles on Access to and Use of the Internet for Electronic Commerce)
	25	데이터 혁신 (Data Innovation)
	26	정부 데이터 공개 (Open Government Data)
	27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Competition in the Digital Economy)
기타 협력 · 대화	28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29	핀테크 협력 (FinTech Cooperation)
	30	디지털 신원 (Digital Identities)
	31	디지털 경제를 위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for Digital Economy)
	32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SMEs and Startups)
	33	협력 (Cooperation)
	34	이해관계자의 참여 (Stakeholder Engagement)

# 1

## 일반 조항

### 1 범위 (제14.2조)

- 동 협정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전자적 수단으로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됨
  - 다만, ▲정부 조달에 관련된 사항, ▲당사국을 대신하여 보유되거나 처리되는 정보와 그 정보의 수집에 관련된 조치에는 동 협정이 적용되지 않음
-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한-싱가포르 FTA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0장(투자) 및 제12장(금융서비스)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의 대상이 됨
  - 특히, 제14.6조(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제14.14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 제14.15조(컴퓨터 설비의 위치) 및 제14.16조(금융서비스를 위한 컴퓨터 설비의 위치)는 한-싱가포르 FTA 제9장, 제10장, 제12장의 예외 및 비합치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음

### 2 정보의 공개 및 정보 공유 (제14.3조, 제14.4조)

-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음
  - 비밀정보란, 공개 시 자국 법에 반하게 되거나, 법 집행을 저해하게 되거나, 공익에 반하게 되거나, 특정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정보를 의미

- 
- 협정문안과 그 요약본, 규정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무료로 공개하는 웹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해당 정보가 최신이고 정확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함

# 2

## 디지털 제품

### 1 관세 (제14.5조)

#### (1) 주요 내용

-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하여, 국경 간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 : 광자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송(제14.1조 정의)

- 다만,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동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내국세, 수수료, 그 밖의 부과금은 당사국에서 부과 가능

#### (2) 관련 현황 및 제도

-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를 포함한 대다수 국가들은 WTO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 〈참고〉 전자적 전송 무관세 논의 동향

- ▶ 전자적 전송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관세부과가 어렵고 과세표준이 명확하지 않아 1998년 WTO 각료회의에서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이래 매회 각료회의에서 이를 연장해오고 있음 ('01, '05, '09, '11, '13, '15, '17, '22년 각료 선언)
- ▶ '22년 6월 제12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제13차 각료회의까지 모라토리엄을 연장 하되, 2024년 3월 31일까지 각료회의가 미개최되는 경우 모라토리엄을 종료한다고 합의

- (1998) We declare that Members will continue their current practice of not imposing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 (2022) We agree to maintain the current practice of not imposing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until MC13, which should ordinarily be held by 31 December 2023. Should MC13 be delayed beyond 31 March 2024, the moratorium will expire on that date unless Ministers or the General Council take a decision to extend.

## ■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챗터를 포함하는 모든 기체결 FTA에서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조항을 규정

※ 기체결 FTA 중 싱가포르('05), 미국('07), EU('10), 페루('11), 튀르키예('12), 콜롬비아('13), 호주('14), 캐나다('14), 중미('18), 영국('19), 이스라엘('21)등과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한-베트남 FTA('15), 한-중국 FTA('15), RCEP('20)은 'WTO 각료결정에 따라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유지'한다고 규정

● 기존 한-싱가포르 FTA는 부속서한에서 'WTO 각료결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양국이 전자적 전송 무관세 조항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음'을 확인

🔑 WTO 각료 선언을 통한 무관세 관행 연장은 정치적 합의를 통한 임시조치의 연장으로 불확실성이 존재

- 동 조항은 다자간 합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영구적 무관세를 약속함으로써, 양국 간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의 예측가능성을 확보

## 2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제14.6조)

### (1) 주요 내용

■ 상대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자국의 동종 디지털제품 대비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함

\* 디지털제품(digital product) :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되며 전자적 전송이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 문자열 · 동영상 · 이미지 · 녹음물 및 그 밖의 제품을 의미(제14.1조 정의)

■ 동 조항은 ▲ 정부 보조금, ▲ 방송(broadcasting)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 국제협정 및 한-싱가포르 FTA 제17장(지적재산권)에 포함된 지적재산권 관련 권리 · 의무와 불합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부속서한에서는 동 조항에서 규정하는 비차별대우의 내용을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로 한정

※ GATT와 GATS에서 규정하는 비차별대우 중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는 상대국 제품과 자국 동종 제품 간의 동등한 대우를, 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는 상대국 제품과 제3국 동종 제품 간의 동등한 대우를 의미

- 또한,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콘텐츠를 포함한 디지털제품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예외로서 인정

## (2) 관련 현황 및 제도

- 우리 기체결 FTA 중 한-싱가포르 FTA('05), 한-미국 FTA('07), 한-중미 FTA('18)에서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국내외 디지털제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지 않음

# 3

## 디지털 무역 및 비즈니스 촉진

### 1 국내 전자거래 체계 (제14.7조)

#### (1) 주요 내용

- 전자거래를 규율하는 국내법 체계를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1996)」(이하, ‘UNCITRAL 모델법’) 및 「UN 전자계약 협약(2006)」(이하, ‘UN 협약’)의 원칙과 합치하도록 유지

\*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1996) :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적으로 승인된 법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법적 장애 및 불명확성을 제거함으로써 각국 법체계의 통일 및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제정한 모델법

국제계약의 전자통신 이용에 관한 UN 협약(2005) : 국가간 전자적 의사표시의 사용에 관한 법적 장애를 제거하고 전자계약을 통한 국제무역 활성화를 위해 채택된 조약

-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2017)」채택을 위해 노력

\*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2017) : 기존의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한 유가증권 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식에 기반한 양도성 문서도 국내외적으로 유효하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통일된 규범을 제시한 모델법으로, 2022년 11월 기준 싱가포르, 바레인, 벨리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UAE(아부다비) 등 7개국만이 국내 법률로 도입한 상태이며, 우리나라는 도입 검토 중

- 전자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지양하고, 전자거래와 관련한 자국의 법체계 개발 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

#### (2) 관련 현황 및 제도

##### 우리나라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1999년에 ‘UNCITRAL 모델법’을 참고로 하여 제정되었으며, 2008년 ‘UN 협약’에 서명 후 동 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2012년 개정됨

- 특히, 동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의 원칙 중 하나로 ‘규제의 최소화’를 규정(제19조)
- 그 외 전자거래와 관련된 「전자어음법」,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도 ‘UNCITRAL 모델법’ 및 ‘UN’ 협약의 원칙과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있음

###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1998년에 ‘UNCITRAL 모델법’을 반영한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을 제정하고, 2006년 ‘UN 협약’에 서명 후 2012년에 동 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법을 개정
- 2021년,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2017)’을 반영하여 「전자거래법」을 재개정하고 전자선하증권(eBLs)을 도입하는 등 UNCITRAL 전자상거래 법제를 선제적으로 도입

[출처 :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 [www.imda.gov.sg](http://www.imda.gov.sg)]

## 2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제14.8조)

\* 전자인증(electronic authentication) : 전자 통신 또는 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검증하거나 전자 통신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절차 또는 행위 (제14.1조 정의)

### (1) 주요 내용

-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당사국 간 상호운용이 가능한 전자인증의 사용을 장려
-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거래를 위한 적절한 인증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거래가 인증 관련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사법 · 행정 당국에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다만, 특정 범주의 거래에 대해서는 인증 방법이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 하거나 공인기관에 의하여 증명되도록 요구 가능

## (2) 관련 현황 및 제도

### 우리나라

- 우리나라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이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 효력을 가지며(제3조), 정부가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제4조)
- 2020년 동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 후, 현재 국내 전자서명·인증에는 특정 서명·인증 수단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 싱가포르

- 싱가포르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 Act)」은 전자서명과 보안 전자서명을 구분하고, 각 서명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
-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은 인증기관에 대한 자발적 인증시스템을 운영하며, 공인된 인증기관은 인증서 발급, 갱신, 일시 중지, 해지 등과 관련된 보다 엄격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출처 : 싱가포르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 2010), 전자거래(인증기관) 규정(Electronic Transactions (Certification Authority) Regulations 2020)]

🔗 양국 간 전자서명 상호인정 등 협력을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 전자거래 활용 확대 및 신뢰성 향상 기대

### 3 물류 (제14.9조)

#### (1) 주요 내용

-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Last Mile Delivery),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를 활용한 물류, ▲페더레이티드 락커(Federated Locker)와 같은 새로운 배송 방식과 물류 신산업에 대한 우수사례와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해 노력

\*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Last Mile Delivery) : 물품이 수화인에게 도달하는 물류서비스 최종 단계로, 배송시간·속도 등 소비자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구간  
페더레이티드 락커(Federated Locker) : 수화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무인택배함

#### (2) 관련 현황 및 제도

##### 우리나라

- 「물류정책기본법」은 ▲정부가 물류 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제27조),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제30조) 하고, ▲물류 공동화·자동화를 추진하는 기업·단체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제23조)을 규정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물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디지털 물류 실증단지 조성 등 추진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저비용, 고효율, 안정성을 갖춘 물류시설을 인증하고,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디지털 물류 실증단지 : 기존 도시에 로봇,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물류 서비스 실증 또는 신규 조성 도시를 대상으로 물류시설·물류망 등 물류계획 수립을 지원

##### 싱가포르

-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은 2016년 물류분야 디지털화를 위한 ‘물류산업 디지털 계획(Logistics IDP)’을 발표

- 동 계획은 물류기업이 채택가능한 단계별 디지털 솔루션(물류 로드맵)과 기술 훈련, 중소기업의 온라인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됨

〈참고〉 싱가포르 물류 로드맵(Logistics Roadmap)

1단계	2단계	3단계
디지털 경제를 위한 준비	디지털 경제에서의 성장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B 전자결제</li> <li>• 차량, 화물, 재고, 운송 관리</li> <li>• 디지털 무역 플랫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온유통 관리</li> <li>• B2B 교역 원활화 플랫폼</li> <li>• 효율적 에너지 관리</li> <li>•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li> <li>• 공급망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류 자동화</li> <li>• AR/VR 활용</li> <li>• 분산원장기술(DLT)</li> <li>• 물류 로봇</li> </ul>

- 2018년부터 주거단지, 도심 지하철역, 커뮤니티 시설 등 공공장소에 여러 물류기업이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소포 보관함 1,000여개를 배치하는 페더레이티드 락커 프로그램(Federated Locker and Collection Points Programme) 추진

[출처 :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 [www.imda.gov.sg](http://www.imda.gov.sg)]

## 4 전자송장 (제14.10조)

\* 전자송장(electronic invoicing) : 구조화된 디지털 형식을 사용하여 공급자와 구매자 간 지급 요청을 자동으로 생성, 교환 및 처리하는 것 (제14.1조 정의)

### (1) 주요 내용

- 국내 전자송장 시스템을 국제적 체계에 기반하도록 하고 양 당사국 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상호운용할 수 있는 전자송장 시스템의 채택을 위해 협력

- 기업의 전자송장 활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 마련 및 기반 시설 확충,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노력

## (2) 관련 현황 및 제도

### 우리나라

- 국경 간 거래에서 사용되는 송장의 형태와 양식은 거래 당사자 간 자율에 따르며, 정부 차원의 별도 표준규정은 없음
  - 다만,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수입업자가 수입신고 시 송품장 (commercial invoice)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 하거나 전자적 제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며, 관련 서식을 제공(제14조, 제15조)

### 전자송장 관련 국내 법령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제14조(무역서류의 전자제출) ② 수입신고 시 법 제327조제1항과 동조 제2항에 따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무역서류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송품장 : 별지 제31호 서식
  - ③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무역서류는 수입화주의 전자서명과 인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그가 지정한 자로부터 직접 제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수입신고시 제출서류) ① 신고인은 제13조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거나 제14조에 따른 무역서류의 전자제출을 이용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송품장. 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 할 때 송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송품장은 확정가격신고 시 제출)

##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2018년 범유럽전자조달시스템(PEPPOL)에 역외국가로 가입하고, 2019년 PEPPOL 회원국 간 상호운용이 가능한 전자송장 표준을 국가 전자송장 시스템으로 도입

\* 범유럽전자조달시스템(PEPPOL) : EU 회원국 간 공공 조달 시스템 연계 및 기술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 프로젝트로, 표준화된 전자송장 시스템을 운영

- 특히, 기업들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對정부 대금 지급 요청시에는 PEPPOL 전자송장을 필수로 사용하도록 함

[출처 :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 [www.imda.gov.sg](http://www.imda.gov.sg)]

- ☞ 상호운용 가능한 전자송장 시스템 채택을 위한 협력사항을 규정하여, 양국 거래 당사자 간 전자송장 활용 확대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간절약, 정확성 제고, 위변조 방지 등 무역결제 업무 전반의 효율성 향상 기대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를 위해 전자송장 관련 국제적 표준 논의에 싱가포르와 공조 및 적극 참여 예정

## 5 전자지급 (제14.11조)

\* 전자 지급(electronic payment) : 지급인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수취인이 수용 가능한 금전상 청구권을 이전하는 것 (제14.1조 정의)

### (1) 주요 내용

- 당사국은(특히, 비은행, 비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전자지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의 채택, ▲전자지급 인프라의 상호운용성과 연결성 증진, ▲전자지급 서비스의 혁신과 경쟁 장려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다음의 사항을 준수

- 인·허가 절차와 요건, 기술 표준 등을 포함하여 전자지급에 대한 규제를 공개하고, 적절한 기간 내 인·허가 완료를 위해 노력
- 전자지급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접근에 있어, 금융 기관과 비금융기관 간 자의적·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음
- 전자지급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서비스 공급자 간 전자 데이터 교환을 위한 전자지급 메시지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채택
  - \* 전자지급 메시지(electronic payment messaging) : 자금이체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금융기관 간 거래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는 문서
-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하여 제공되는 도구 및 프로토콜 등 개방형 플랫폼 및 구조의 이용을 촉진하고, 가능한 경우, 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제품 및 서비스용 API를 제3자가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장려
  - \*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특정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정한 통신 규칙
-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혁신과 경쟁, 새로운 전자지급 상품 및 서비스 도입을 촉진

## (2) 관련 현황 및 제도

### 우리나라

- 「전자금융거래법」 및 하위 법령은 전자금융업 허가·등록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서 전자 금융업 허가·등록 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
- 특히, 전자 금융업 허가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 ※ 다만, 신청 서류 흠결에 따른 보완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동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 금융결제원은 다양한 서비스를 표준화된 API 형태로 공개하고 그 이용을 지원하는 금융권 공동 개방형 인프라인 'Open API 포털(www.openapi.kftc.or.kr)'을 운영

- 핀테크 기업 등은 금융결제원의 다양한 API 서비스를 활용하여 오픈뱅킹과 같은 최신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대리인, 위탁테스트, 규제신속확인제도 등 금융규제샌드박스를 운영

#### 〈참고〉 금융규제샌드박스

- ▶ (배경) 정보통신기술발달에 따른 혁신적 금융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엄격한 인허가 제도 및 다양한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2019년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
- ▶ (대상 및 종류)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 상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다음의 4가지 서비스를 제공
  - (혁신금융서비스)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 방식,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인정
  - (지정대리인) 핀테크 기업 등(지정대리인)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하고, 금융회사와 협력하여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
  - (위탁테스트)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시범영업 해보는 제도
  - (규제신속확인제도) 규제 불확실성에 직면한 금융서비스 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적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주는 제도

####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기술 발달에 따른 결제서비스 변화에 대응하고 핀테크 시장의 성장 지원을 위해, 2019년 「결제서비스에 관한 법률」을 제정

- 동법은 전자지급을 포함한 결제서비스를 7가지로 구분하고, 각 서비스의 범위와 위험 정도에 따라 규제 내용을 간소화

※ 싱가포르 「결제서비스에 관한 법률」의 결제 서비스 구분 : ▲계좌개설, ▲국내송금, ▲국제송금, ▲가맹점 인수, ▲전자화폐 발행, ▲디지털토근, ▲환전 등

- 싱가포르 통화청(MAS :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2016년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관련 규제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통화청 및 각종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API를 웹사이트에 공개

※ 특히, 2018년에 도입한 샌드박스 익스프레스는 보험중개업 등에 대해 기술혁신성, 기업 건전성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21일 내 샌드박스를 승인하도록 함

[출처: 싱가포르 통화청(MAS), [www.mas.gov.sg](http://www.mas.gov.sg)]

👉 전자지급과 관련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규제 시스템 및 혁신과 경쟁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양국 핀테크 기업의 자유로운 비즈니스와 제휴 확대, 상호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 6 종이서류 없는 무역 (제14.12조)

### (1) 주요 내용

-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에 대해 종이문서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이를 공개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영어본을 제공해야 함

\* 무역행정문서(trade administration documents) : 상품의 수입·수출과 관련하여 수출입업자에 의해 또는 그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당사국이 발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 (제14.1조 정의)

- 수입·수출·환적화물 통관 시 요구되는 정보와 무역행정문서의 제출이 가능한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를 설치·운영

### 〈참고〉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 ▶ (UN/CEFACT) 수출입, 환적 관련 규정상 요구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무역관련 정보를 한곳에 한번만 제출하도록 하는 싱글윈도우를 설치토록 정부 및 무역업계에 권고  
\* United Nations Centre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무역 촉진 및 전자상거래 표준화 기구)
- ▶ (WCO) 싱글윈도우 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무역·운송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표준화된 정보를 단일창구를 통해 수출입 및 통관물품의 규제요건 사항들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규정

## ■ 원산지증명서, 비가공증명서 등 무역행정문서 관련 데이터 교환을 위한 데이터 교환 시스템 개발에 노력

- 데이터 교환 시스템의 호환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의 개발과 채택을 위해 노력
- 데이터 교환 시스템의 사용 및 채택을 증진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 등 정보·경험을 공유하고, 시범사업에 대해 협업

## (2) 관련 현황 및 제도

### 우리나라

####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신청·승인한 전자 무역문서는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제15조)

\* 전자무역기반시설 : 무역과정에서 처리되는 외환·상역·물류 등 관련 문서를 전자적으로 보관·중계·증명하는 정부 인프라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서 운영·관리하는 uTradeHub(전자무역포털)을 의미

#### ■ 관세청은 2006년부터 식약처·검역본부·환경부·각종 협회에 대한 수출입 요건확인 신청과 세관예의 수출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가능한 전자통관 시스템인 UNI-PASS 싱글윈도우를 운영

- 대부분의 무역행정문서는 UNI-PASS([www.unipass.customs.go.kr](http://www.unipass.customs.go.kr))에 전자적 형태로 업로드되어 있음

※ <참고> 통관단일창구 도입 전후의 수출입요건신청 및 수출입신고 과정 비교



###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무역업체가 수출입 관련 제반 사항을 세관 등 무역 당국에 일괄 제출할 수 있는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인 TradeNet을 운영
- 최근에는 정부 및 기업을 블록체인으로 연결하여 전자무역서류를 교환, 검증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인 TradeTrust를 개발 및 운영

#### <참고> 싱가포르 TradeTrust

- ▶ (의의) 정부와 기업들을 분산원장기술(DLT)을 사용한 공공 블록체인으로 연결하여 전자 무역서류의 진위와 출처를 증명하고, 이를 교환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 ▶ (특징) ▲블록체인을 활용한 탈중앙화 및 보안성 유지 ▲데이터 형식 비제한 ▲오픈소스 활용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 준수 등
- ▶ (기대효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무역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자동화된 처리를 통해 거래비용·시간 절감, 사기 위험 등 감소로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무역환경 구축

[출처 :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 [www.imda.gov.sg](http://www.imda.gov.sg)]

☞ 양국 간 전자무역문서 교환 협력을 통해 양국 간 무역에서의 전자무역문서 활용을 촉진하여 문서처리 및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통관 소요시간 단축 등 거래효율성 제고 기대

- 동 협정을 계기로, 관세청과 싱가포르 세관 간 「한-싱 DPA 이행 촉진을 위한 전자적 데이터 교환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원산지증명서 및 비가공증명서에 대한 전자본 발급 및 상호인정을 시행한 후, 향후 자료 교환량 증가 추이에 따라 양국 간 데이터 교환시스템 구축을 협의 예정

## 7 특송화물 (제14.13조)

### (1) 주요 내용

■ 적절한 통관 통제를 유지하면서, 항공 특송화물을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춘 신속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

- 특송화물의 도착 전 그 화물 반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처리
- 가능하다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적하목록과 같이 특송화물에 포함된 모든 화물 정보에 대해 단일 제출을 허용
- 통상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통관서류를 제출한 후 4시간 내 반출
- 특송화물의 중량·가격에 상관없이 적용

※ 단, 화물 반출의 조건으로 상품 중량·가격에 따른 신고서나 부가서류 제출, 관세 납부 등 정식 통관절차를 요구할 수 있음

■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 최저과세기준(de minimis)을 정하고, 해당 금액 미만의 화물에는 관세 또는 조세를 미부과

- 최저과세기준을 선정 시 물가상승률, 무역원활화 효과, 위험관리, 행정비용,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관세 징수와 관련된 그 밖의 요소들을 고려

- 다만, 수입허가 대상 상품 등 제한되거나 관리되는 상품의 화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2) 관련 현황 및 제도

### 우리나라

- 「관세법」 및 동법 시행규칙은 자가사용물품 또는 상용견본품 중 물품 가격이 \$150 이하인 물품은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신속 통관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
  - 다만, 일부 화장품류, 의약품, 식품·주류·담배류 등 국민건강을 위한 우려 물품은 신속 통관의 대상에서 제외됨
- 또한, 「관세법」 등은 물품 가격이 \$150 이하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는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규정

###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수입물품의 종류 및 가격(CIF 기준)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제도 및 관세·부가세 면제(또는 유예) 제도를 운영

물품구분	물품가격(CIF/SGD)	관세	GST (부가세)
비과세, 비요건 대상	< or = S\$400 (항공화물)	면제	면제
	< or = S\$400 (육상/해상화물)	면제	부과
	>S\$400	면제	부과
비과세, 요건 대상	< or = S\$400 (항공화물)	면제	면제
	< or = S\$400 (육상/해상화물)	면제	부과
	>S\$400	면제	부과
과세, 비요건 대상	< or = S\$400	부과	부과
	>S\$400	부과	부과
과세, 요건 대상	< or = S\$400	부과	부과
	>S\$400	부과	부과

비과세, 비요건 대상 (싱가포르 MES 과세대상자 수입물품)	< or = S\$400 (항공화물)	면제	면제
	< or = S\$400 (육상/해상화물)	면제	유예
	>S\$400	면제	유예
비과세, 요건대상 (싱가포르 MES 과세대상자 수입물품)	< or = S\$400 (항공화물)	면제	면제
	< or = S\$400 (육상/해상화물)	면제	유예
	>S\$400	면제	유예

\* Major Exporter Scheme(주요 수출업자 제도) : 수입물품 대부분을 재수출하는 회사의 현금흐름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싱가포르 국세청에 의해 등록/관리

[출처 : 싱가포르 세관, [www.customs.gov.sg](http://www.customs.gov.sg)]

 양국 간 특송화물의 처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정에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 특송화물을 활용한 상품 거래에 제도적 안정성을 보장

# 4

## 데이터

### 1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 (제14.14조)

#### (1) 주요 내용

- 비즈니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개인정보 포함) 이전을 금지·제한할 수 없음
- 당사국의 고유한 규제 권한을 인정하며,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LPPO;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를 달성하기 위한 금지·제한 조치는 예외적으로 가능
  -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 수단이거나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니어야 하며, 목표 달성을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부과하지 않아야 함

#### (2) 관련 현황 및 제도

##### 우리나라

- 국경 간 정보 이전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별 법령에서 다루고 있음
  -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제공의 목적과 기간 등을 알리고, 정보주체가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경 간 정보 제공이 가능(제17조 제3항)
  - 그 외 개별법령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나 공간정보 등 일부 정보에 대해 국외 이전을 제한
    - ※ (민감개인정보)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는 국외이전이 제한됨(「금융회사의 정보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 (공간정보) 지도·측량용 사진 등의 국외 반출을 위해서는 국토부장관의 허가 또는 관계부처 협의체의 반출 허용 결정 필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참고〉 국경 간 정보 전송 관련 주요 국내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금융위 고시)

- 제5조(특정정보의 보호) ① 제4조(정보처리의 위탁)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각 관련 법령상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때 개인정보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관리법)

-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 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공공 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공공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에서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기본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이나 기본측량기록을 복제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할 수 없다.
  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해외 기관이 동법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가능하다고 규정

- 국외이전 허용 요건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해외 기관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거나, ▲개인정보에 대해 동법에 상응하는 보호 수준을 제공한다는 특정한 인증이 있는 경우를 제시
  - ※ 전자의 집행가능한 의무는 법, 계약,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등의 의무를 의미하며, 후자의 인증은 APEC CBPR 및 APEC PRP 인증 등을 의미함

[출처 :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 (Advisory Guidelines on Key Concepts in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Revised 17 May 2022)]

☞ 우리 기업이 싱가포르에 지사를 구축한 경우, 본사와 지사에서 각각의 사업수행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이전 가능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원활한 글로벌 비즈니스 수행이 가능한 환경 조성

- 한편, 데이터 이동이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당사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일정수준 보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추진

※ 「개인정보 보호법」 정부 개정안 '21.9.28일 국회 제출

## 2 컴퓨터 설비의 위치 (제14.15조)

\* 컴퓨터 설비(computing facilities) : 상업적 용도로 정보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컴퓨터 서버 및 저장장치를 의미하며, 금융시장 인프라의 컴퓨터 서버 또는 저장장치나 금융시장 인프라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서버 또는 저장장치는 포함하지 않음 (제14.1조 정의)

### (1) 주요 내용

■ 당사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당사국 내의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당사국 내에 컴퓨터 설비를 위치시킬 것(현지화)을 요구할 수 없음

● 금융분야의 컴퓨터 설비에 대해서는 제14.6조에서 별도로 규정

■ 당사국의 고유한 규제 권한을 인정하며,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LPPO;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를 위한 요구는 예외적으로 가능

●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 수단이거나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니어야 하며, 목표 달성을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부과하지 않아야 함

## (2) 관련 현황 및 제도

■ 국내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컴퓨터 설비 현지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 금융, 의료 등 관련 정보 유출 시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큰 분야의 경우, 정보처리를 위한 전산설비를 국내에 두도록 규정

※ (금융분야) 제14.6조(금융서비스를 위한 컴퓨터 설비의 위치) 내용 참고  
 (의료분야) 전자기록 시스템 및 그 백업장치의 물리적 위치를 국내로 한정(「전자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 3 금융서비스를 위한 컴퓨터 설비의 위치 (제14.16조)

#### (1) 주요 내용

■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보유한 정보(거래, 운영의 기초가 되는 정보 등)에 대하여 금융당국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며 완전하고 지속적인(Immediate, Direct, Complete and Ongoing) 접근이 금융 규제 및 감독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접근을 보장할 필요성을 인정

- 또한,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국경 간 데이터 사용 능력이 금융 분야의 혁신과 소비자 이익 등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

■ 이러한 인식하에, 다음을 위해 노력

- 금융규제·감독을 목적으로, 금융당국이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역외 전산설비에서 처리되는 정보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며 완전하고 지속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의 개발·채택·이행 등과 관련된 경험·견해를 공유
- 위와 같은 금융당국의 정보접근이 가능한 한,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제공자가 자유롭게 역외 전산설비를 이용하도록 촉진하는 공동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장려

## (2) 관련 현황 및 제도

### 우리나라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 2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고유식별 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처리 시스템을 국내에 설치하도록 규정

※ 다만, 동 규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국 금융 회사의 국내지점 및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금융서비스 컴퓨터 설비 위치 관련 국내 법령

#### 전자금융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 제1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른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의 중요도 평가
2. <별표 2의2>의 항목을 포함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 평가
3. <별표 2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한 자체 업무 우수성 운영기준의 마련 및 준수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자체 업무 우수성 운영기준에 대하여 제8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려는 날의 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본다.

1.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종략 -

④ 제2항의 절차를 거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처리시스템이 위치한 전산실에 대해서는 제11조제11호 및 제12호, 제1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 제50조의2에 따른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외한다)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2호를 적용하고,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을 국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⑨ 그 밖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금융분야 전산설비와 관련한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여, 향후 양국 금융환경을 고려하여 금융회사 등의 전산설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협력 근거를 마련

# 5

##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

### 1 개인정보 보호 (제14.17조)

\*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 :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데이터를 포함한다) (제14.1조 정의)

#### (1) 주요 내용

- 당사국은 전자거래에 참여한 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 법 체계를 채택 또는 유지해야 하며, 국내 법 체계를 개발 시 관련 국제기구의 원칙 및 지침을 고려
- 당사국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부터 타 당사국의 국민을 자국민과 동일하게 보호
- 전자거래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연인의 구제 청구 방법,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 방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정보를 공표
- APEC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시스템(CBPR) 활용 또는 각 당사국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체계 간 상호인정 등 서로 상이한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매커니즘 개발을 장려

\* APEC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 시스템(APEC Cross-Border Privacy Rules) : 2011년 APEC 회원국간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개발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인증제도

#### (2) 관련 현황 및 제도

##### 우리나라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처리 등에 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방안,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

- 동 법의 정보주체에는 외국인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내국민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
- 2017년 APEC CBPR에 가입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국내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2022년부터 기업 대상 인증을 개시
  -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수준에 대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ISMS-P)'를 운영 중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ISMS-P; 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기업 또는 기관이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구축, 운영하는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

### 싱가포르

- 싱가포르 「개인정보 보호법(PDPA; Personal Data Protection Act)」은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PDPC)의 설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접근·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 위반 시 조치 및 처벌 등에 대해 규정
- 2018년 APEC CBPR에 가입하고,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업 대상 인증을 진행 중
  - 2020년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 법령을 개정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허용 요건으로 APEC CBPR 인증 취득을 추가
- IMDA는 개별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책임 있는 데이터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자발적으로 인증하는 '데이터 보호 인증제도(Data Protection Trustmarks)'를 운영

[출처 :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 [www.imda.gov.sg](http://www.imda.gov.sg)]

👉 싱가포르에서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현지 국민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를 마련

## 2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제품 (제14.18조)

\* 암호기법(cryptography) : 정보 내용을 숨기거나 은밀한 수정 또는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변환하는 원칙, 수단 또는 방법을 의미하며, 하나 이상의 비밀 매개변수 또는 관련된 키 관리를 사용한 정보의 변환에 한정함(제14.18조 정의)

### (1) 주요 내용

-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의 상업적 이용(제조·판매·유통·수입·사용 등)의 조건으로, ▲ 암호기법과 관련한 정보 이전이나 해당 정보에의 접근, ▲ 자국 사업자와의 동업, ▲ 특정 암호 또는 알고리즘의 사용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제품의 예시로는 케이블 TV, 디지털 셋탑박스, 스마트 미터기, 휴대통신단말기, 의료기기 등이 있음
- 다만, ▲ 중앙은행 등 당사국 정부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요건, ▲ 금융 관련 감독·조사 등을 위한 당사국의 조치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2) 관련 현황 및 제도

- 국내법에서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ICT 상용 제품과 관련하여 암호기법의 이전이나 접근, 국내 사업자와의 동업, 특정 암호기법의 사용 등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음
  -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암호화 ICT 제품에 적용되는 ‘정보보호 제품 평가·인증제도’를 운영중이나, 이는 검증된 성과평가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ICT 제품에 대한 새로운 무역기술장벽 도입 및 강제적인 기술 이전·유출을 금지하는 조항을 우리 무역규범으로 최초 도입

### 3 소스코드 (제14.19조)

#### (1) 주요 내용

- 당사국은 상대국 기업의 소프트웨어 또는 이를 포함하는 제품을 국내로 수입·유통·판매·사용하는 조건으로, 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이전이나 접근, 또는 소스코드에 포함된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을 요구할 수 없음

\* 소스코드(source code) :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래밍을 기술한 언어

알고리즘(algorithm) :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취해지는 일련의 정의된 절차 (제14.1조 정의)

- 국내법에 따른 수사·조사·검사 또는 사법·행정 절차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을 보존하도록 하거나 관련 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경우 법령을 통해 해당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이 무단공개 (unauthorised disclosure)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갖추어야 함

#### (2) 관련 현황 및 제도

- 우리나라는 기업의 영업비밀 및 지적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국내외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해 그 소스코드 또는 알고리즘의 이전이나 접근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 소스코드와 알고리즘은 소프트웨어의 핵심 요소로,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 진출시 관련 정보의 부당한 공개 및 접근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기업의 보다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

## 4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제14.20조)

\*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메시지(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 : 수신자의 동의 없이 또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또는 마케팅 목적을 위해 전자적 주소로 송부되는 전자 메시지 (제14.1조 정의)

### (1) 주요 내용

- ▲상업용 전자메시지 수신을 위한 수신자의 사전 동의 의무화, ▲스팸메시지 발신자의 수신 거부 방안 마련 의무화, ▲그 밖의 스팸 메시지 최소화 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피해자 구제수단을 마련
- 스팸메시지 규제와 관련하여 상호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협력하도록 노력

### (2) 관련 현황 및 제도

#### 우리나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 취득이 필요하며,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표시나 동의 철회 시 메시지 전송이 금지됨(제50조)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불법스팸신고 소프트웨어(SPAMCOP)를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동 소프트웨어를 통한 신고는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에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음
  -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메일 스팸트랩에서 탐지된 스팸정보를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에 제공하여 싱가포르로부터 국내로 유입되는 불법 스팸메시지를 차단하는 협력사업을 진행 중

## 싱가포르

- 싱가포르 「스팸통제법(Spam Control Act)」은 수신자가 요청 또는 동의하지 않은 메시지를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메시지’로 규정하고, 이를 전송 시 반드시 수신 거부 가능 방법을 포함하도록 함
-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에 따라 광고 목적의 음성·문자·팩스 수신 거부를 희망하는 전화번호를 등록하는 ‘Do Not Call(DNC) Registry’를 운영

[출처 : 싱가포르 스팸통제법(Spam Control Act),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 스팸메시지 규제에 대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통해 온라인 쇼핑물 등을 활용하는 양국 소비자들의 편익 증대 기대

## 5 온라인 소비자 보호 (제14.21조)

### (1) 주요 내용

- 온라인 상업활동에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사기·기만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소비자 보호법을 채택 또는 유지해야 함
  - 사기·기만적 행위란 소비자에게 실제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사기적이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 ▲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표시(묵시적 허위 표시를 포함), ▲ 소비자에게 비용을 청구한 후 상품 등을 미제공, ▲ 소비자의 승인없이 그의 계정에 청구하거나 그로부터 인출하는 행위 등을 포함
-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소비자 보호법 집행 및 사기·기만적 행위와 관련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협력을 증진

- 
-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매커니즘이 유익함을 인정

## (2) 관련 현황 및 제도

### 우리나라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금지행위 등을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법 제23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시
- 한국소비자원(KCA)은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싱가포르 소비자협회(CASE; Consumers Association of Singapore)와 MOU를 체결하여 양국 간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한 협력을 진행 중

### 싱가포르

- 싱가포르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Consumer Protection (Fair Trading) Act)」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기만적 행위, 거짓 표시·광고 행위 등을 금지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산하 경쟁·소비자위원회(CCCS;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of Singapore)는 싱가포르 소비자협회(CASE; Consumers Association of Singapore) 등과 협력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조정 등 소비자 피해구제를 지원

🔑 국경간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규정함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양국 간 전자상거래 환경 마련

## 6 사이버보안 협력 (제14.22조)

### (1) 주요 내용

- 사이버 보안 분야 협력과 관련하여, ▲ 컴퓨터 보안사고 대응 담당 국가기관의 역량 구축, ▲ 악의적 침입 및 악성코드 대응에 있어 기존의 협력 메커니즘 활용, ▲ 상호 자격인정을 포함한 사이버보안 분야 인력 개발의 중요성을 인정

### (2) 관련 현황 및 제도

- 우리나라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이버 보안 관련 국제 협력 및 교류를 적극 추진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19년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CSA)과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양국의 사이버보안 전략과 모범사례, 침해사고 등에 대한 정보공유, 인력 교류 및 역량 강화 등 협력을 진행 중

🔑 양국 간 사이버보안 관련 인력개발 등 협력 확대가 기대되며, 특히, 사이버보안 관련 자격의 상호인정 협력 추진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양국 담당기관 간 상호인정 자격종류에 대한 선행 조사 추진 예정

## 7 온라인 안전 및 보안 (제14.23조)

### (1) 주요 내용

- 디지털 경제에서의 온라인 안전 및 보안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다중 이해당사자 접근을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

\* 다중 이해당사자 접근(multi stakeholder approach) : 인터넷은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운영해나가는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정부, 기업,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협력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접근방식

- 온라인 안전 및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하도록 노력

### (2) 관련 현황 및 제도

-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서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규정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한국정보보호학회와 ‘사이버보안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기업, 학회, 각종 협·단체 등 사이버 보안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 6

## 디지털 경제의 개방과 혁신

### 1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제14.24조)

#### (1) 주요 내용

-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아래의 행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얻는 이익을 인정
  -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에 저해가 되지 않는 한, 소비자가 선택한 인터넷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
  - 네트워크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소비자가 선택한 장치(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
  - 소비자가 인터넷 접근 서비스 공급자의 네트워크 관리 관행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

#### (2) 관련 현황 및 제도

##### 우리나라

-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규정
  - \* 망 중립성(net neutrality) :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 유형, 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
  - 동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합법적인 서비스·기기 이용, 트래픽 관리에 대한 정보접근),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의 불합리한 트래픽 차단·차별 금지,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요건, ▲망 중립성 예외 서비스(특수서비스)의 제공 요건과 한계 등을 규정

### 〈참고〉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 ▶ (배경 및 연혁) 망 중립성이 통신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이해관계자 협의에 기초한 자율규제, 연성규범(soft law)의 망 중립성 원칙을 선언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
- ▶ (주요내용)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IPTV,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등) 일정한 품질 유지를 위해 망 중립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를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장 기본원칙	제3조(이용자의 권리) 제4조(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제5조(차단 금지) 제6조(불합리한 차별 금지) 제7조(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제3장 특수서비스	제8조(특수서비스)
제4장 상호협력 및 정보제공	제9조(상호협력) 제10조(정보제공)

###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2011년 '망 중립성 정책 프레임워크(Policy Framework for Net Neutrality)'를 발표

- 동 프레임워크는 ▲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 차단금지, ▲ 경쟁 및 상호접속 규칙 준수, ▲ 투명한 정보제공, ▲ 최소품질 수준 충족, ▲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요건 등을 망 중립성을 위한 주요 원칙으로 설정

[출처 :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 [www.imda.gov.sg](http://www.imda.gov.sg)]

## 2 데이터 혁신 (제14.25조)

### (1) 주요 내용

- 당사국은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데이터 혁신을 지원하고, 데이터 혁신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
-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데이터 공유 프로젝트 추진, ▲데이터 이전 관련 정책 및 표준 개발, ▲데이터 혁신 관련 사례 공유 등 협력을 위해 노력

### (2) 관련 현황 및 제도

#### 우리나라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은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 및 데이터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들을 규정
  - ※ 동 법은 ▲데이터의 생산·분석·결합·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 ▲공정한 데이터 유통·거래 환경 조성,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업 지원 등과 관련한 사항들을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의 혁신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 바우처’, ‘데이터 플래그십’, ‘중소기업 데이터 분석·활용’ 등 사업 진행
  - \* 데이터 바우처 :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혁신 및 신제품·서비스 개발 시 이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 및 가공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
  - 데이터 플래그십 :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현안 해결 및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활용방법 및 데이터 수집·가공·분석 관련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 싱가포르

■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은 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 데이터 공유 시 고려해야 할 법적·기술적 고려사항 등을 포함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프레임워크(Trusted Data Sharing Framework)’를 발표하고 데이터 공유 계약 모델을 제공
- 안전하고 혁신적인 데이터 사용방법 탐색 및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데이터 규제 샌드박스(Data Regulatory Sandbox)’ 운영

[출처 :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 [www.imda.gov.sg](http://www.imda.gov.sg)]

👉 데이터 혁신을 증진하기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양국 간 공동프로젝트 추진 등 협력의 근거를 마련

## 3 정부 데이터 공개 (제14.26조)

### (1) 주요 내용

■ 당사국은 정부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및 사용을 촉진하는 것의 유익함을 인정

\* 정부 정보(government information) : 중앙정부가 보유하는 비독점적 정보(데이터를 포함) (제14.1조 정의)

■ 대중에게 공개되는 정부 정보가 다음의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노력

- 적절하게 익명화되고 서술적인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며, 기계판독 가능한 (machine-readable) 공개된 형식으로 검색, 불러오기, 사용, 재사용 및 재분배가 가능

-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그 정보는 신뢰할 수 있고 무료로 이용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공간적으로 구현가능한 형식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정기적으로 갱신
- 사업 및 연구기회를 증진하고 창출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이 공개한 정부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데 협력하도록 노력

## (2) 관련 현황 및 제도

### 우리나라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관련 절차 등을 규정
  - \* 공공데이터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법 제2조 정의)
-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통합 창구로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를 동 포털에 등록
  -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 국민의 쉽고 편리한 공공데이터 이용을 위해, 공공기관이 생성·취득·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통합 창구로, 파일데이터, 오픈 API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제공. 2022년 9월 기준 746개 정부·공공기관의 73,167건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포털 가입자 수 총 47.9만명

###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전략을 마련하고,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데이터 포털(data.gov.sg)을 운영

### 〈참고〉 싱가포르 공공데이터 포털

- ▶ (개요) 2011년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원스톱 포털로 개발되었으며, 총리실 산하 정부 기술기관(GovTech)에서 운영
- ▶ (목적)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향상, 시각화 기능을 통한 정부 데이터 및 분석 결과 공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 촉진, 데이터 분석 및 연구 확대 등
- ▶ (이용현황) 현재 70여개 정부·공공기관의 1,881개 데이터 셋을 개방중(2022년 5월 25 기준)이며,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약 100여개의 앱이 출시됨

[출처 : 싱가포르 Civil Service College(CSC), [www.csc.gov.sg](http://www.csc.gov.sg)]

🔑 정부 데이터를 공개 시, 데이터가 갖추어야 할 요건과 관련 협력 노력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공공데이터 정책 수립 및 공조, 공동 연구 추진 등 협력의 근거를 마련

## 6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제14.27조)

### (1) 주요 내용

-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및 경쟁정책의 개발·이행에 대한 경험·정보 교환, 담당 공무원 교류 등 협력을 위해 노력
- 당사국의 디지털 시장이 개방적이고, 경쟁적이며, 효율적이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

### (2) 관련 현황 및 제도

-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 정부와 경쟁법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을 규정

- 동 법에 근거하여, 한-싱가포르 FTA 제15장(경쟁)은 양국 간 경쟁법 집행 관련 협의 의무(제15.5조)와 정보교환 등 협력 사항(제15.6조)을 규정하고 있음

경쟁 관련 협력을 위한 법령 및 협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 제1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외국정부의 법집행 요청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지원요청에 따른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한국-싱가포르 FTA (제15장 : 경쟁)

- 제15.5조(협의) ①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반경쟁적 관행의 제거를 포함하여, 이 장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협의한다.
- ② 이 조에 따른 협의 중에 각 당사국은 협의 주제가 되는 사안의 관련 측면에 대한 논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타방 당사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③ 이 장에 따른 상호 협의와 관련하여 양 당사국 간에 교환된 정보 또는 서류는 비밀로 유지된다.
- 제15.6조(협력) ①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내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위하여 경쟁당국 간 협력 및 조정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한-싱가포르 FTA 경쟁 챕터(제15장)에서 규정하는 경쟁법 집행 관련 협력의 중요성을 디지털 경제와 관련하여 다시 언급함으로써,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이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력 의지를 재확인

# 7

## 기타 협력 및 대화

### 1 인공지능 (제14.28조)

#### (1) 주요 내용

-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사용을 위한 윤리적 거버넌스 체계 개발의 중요성을 인정
  - 지역, 다자 및 국제포럼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칙과 지침을 고려한 'AI 거버넌스 체계'를 개발하는데 협력하도록 노력
- AI 기술의 사용에 대한 규제, 정책과 이니셔티브에 대한 대화를 장려하고, 관련 경험 공유를 위해 협력하도록 노력

#### (2) 관련 현황 및 제도

##### 우리나라

- 「지능정보화기본법」은 국내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개발,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국제협력 등을 규정
- 2020년 12월, AI 개발에서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일반원칙으로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 2022년 2월,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AI 개발·운영자의 윤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 자율점검표」, ▲AI 개발자의 개발 과정상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발안내서」를 마련

### 〈참고〉 인공지능 윤리기준

- ▶ (목적)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및 확산에 따라 정부·공공기관, 인공지능 기술개발자,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공급자·활용자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고려해야 할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
- ▶ (3대 기본원칙)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를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기준
  - (인간 존엄성 원칙) 인공지능의 개발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성과 견고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
  - (사회의 공공선 원칙) 취약계층의 지능정보사회 접근성을 보장하고 인류의 보편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할 것
  -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며 인류의 삶과 번영을 위해 공헌할 것
- ▶ (10대 핵심요건) 3대 기본원칙의 실천·이행을 위한 핵심요건으로 ①인권보장, ②프라이버시 보호, ③다양성 존중, ④침해금지, ⑤공공성, ⑥연대성, ⑦데이터 관리, ⑧책임성, ⑨안전성, ⑩투명성이 해당됨

## 싱가포르

-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는 2019년부터 「모델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Model AI Governance Framework)」를 발표
  - 민간 조직이 AI 솔루션 개발 시 직면하게 되는 주요 윤리, 거버넌스 이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세 지침을 제공

[출처 :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 [www.pdpc.gov.sg](http://www.pdpc.gov.sg)]

- ☞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활용을 위한 협력 규정을 마련하여, 국제사회의 AI 윤리적 거버넌스 구축 논의에서 양국 간 공조 기대
  - 동 협정을 계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싱가포르 정보통신부(MCI) 간 「인공지능 협력 MOU」를 체결하고, 인공지능 분야 정보공유, 공동연구 등 실질 협력 진행 예정

## 2 핀테크 협력 (제14.29조)

### (1) 주요 내용

- 핀테크 솔루션 개발을 촉진하고, 핀테크 분야 기업인 및 스타트업 인재에 대한 협력을 장려

### (2) 관련 현황 및 제도

- 우리 금융위원회와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16년 「핀테크 협력 MOU」를 체결하고, 금융분야 혁신을 위한 정책 정보공유 및 핀테크 관련 대화 개최 등 협력을 진행
  - 또한, 2018년 개정된 MOU를 토대로 상대국 금융당국이 추천한 핀테크 기업의 국내 진출 시 인가 절차 등을 지원하는 ‘추천 매커니즘(Referral Mechanism)제도’를 운영

🔑 양국 핀테크 기업 간 협력 기회 확대를 통해, 싱가포르를 교두보로 한 국내 핀테크 기업의 아세안 핀테크 시장진출 촉진 기대

## 3 디지털 신원 (제14.30조)

### (1) 주요 내용

- 각 당사국이 디지털 신원에 대한 상이한 구현 및 법적 접근을 취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자국 체계 간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해 다음을 노력

- 각 당사국의 디지털 신원 구현 간 기술적 상호운용성이나 공통 표준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체계를 수립·유지
  - 보다 폭넓은 국제적 체계를 수립·유지
  - 각 당사국의 디지털 신원 및 그 법적 효과를 인정
  - 디지털 신원과 관련한 정책·규제, 기술구현·보안표준, 우수관행에 대한 전문 지식 교환
- 다만,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LPPO;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예외적으로 인정

## (2) 관련 현황 및 제도

### 우리나라

- 우리나라는 디지털 비대면 경제에서의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증명을 위해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신분증을 단계적으로 도입 중
-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 시범사업 후, 2022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으로,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편의점, 병원, 주류 판매점, 숙박시설 등 기존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 가능

###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정부·민간 서비스를 이용 시 사용가능한 디지털 신원 서비스인 ‘싱패스(SINGPASS)’를 운영
- 싱패스는 정부조달, 건설, 부동산, 결혼·출산·육아 지원, 취업, 교육, 보건, 투표, 노령인구·저소득층 지원 등 약 800여개의 정부·민간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원 확인이 가능

[출처 : 싱가포르 싱패스, [www.singpass.gov.sg](http://www.singpass.gov.sg)]

🔗 양국 간 상호운용 가능한 디지털 신원 제도 논의를 통해 국내 모바일 신분증의 활용도를 제고 가능

- 향후 국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다양한 부문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인 바, 모바일 신분증 도입·운영과 관련한 우리 경험을 토대로 싱가포르 측과 우수관행 공유 및 상호운용성 논의를 진행 예정

## 4 디지털 경제를 위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 (제14.31조)

### (1) 주요 내용

■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표준의 개발과 그 채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다자 및 국제 포럼에서 양국 간 상호 관심 분야에 참여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

- 이러한 협력은 ▲투명성, ▲개방성, ▲공정성과 일관성, ▲효과성과 관련성의 원칙 및 절차에 따라야 함

■ 적합성평가 결과의 국경 간 인정을 촉진하는 매커니즘으로, 관련 기관 간 약정, 지역·국제적 차원의 인정 협정 등의 중요성을 인식

\* 적합성평가 : 제품 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인증·시험·검사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정의)

■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표준·기술규정·적합성평가절차의 개발 및 적용에 대한 기술지원과 역량강화, ▲국제 표준화 활동 참여, ▲공동연구, ▲정보 및 경험 공유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

### (2) 관련 현황 및 제도

■ 「국가표준기본법」은 표준 및 기술규정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고(제20조), 적합성평가절차가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과 일치하도록 노력하며(제21조), 국제표준 협력을 증진(제26조)할 것을 규정

## 5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제14.32조)

### (1) 주요 내용

- 디지털 경제에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무역·투자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을 노력
  -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역량강화와 시장 확대를 위한 디지털 도구·기술 활용에 대한 정보 및 우수사례 공유
  -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온라인 플랫폼 참여를 통한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등 국제적인 공급망에의 연결 확대 지원

### (2) 관련 현황 및 제도

-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스타트업의 디지털 경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플랫폼 및 자사 쇼핑물을 통한 온라인 수출 확대,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활용한 서비스 혁신, ▲유망 비대면·디지털 분야 우대보증 등을 지원

📌 싱가포르의 우리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아세안 시장진출을 위한 주요 거점으로, 양국 중소기업·스타트업 간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글로벌 공급망에의 참여 증진 기대

※ 우리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상위 5개국(백만달러, '21) : 일본(235), 미국(205), 중국(110), 싱가포르(19), 말레이시아(8) [출처 : 관세청]

-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싱가포르 기업청(ESG) 간 체결한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MOU」 및 2020년 싱가포르에 개소한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예정

## 6 협력 (제14.33조)

### ■ 당사국은 다음의 협력을 위해 노력

- ▲ 개인정보보호, ▲ 온라인 소비자 보호, ▲ 스팸메시지, ▲ 전자통신상 보안, ▲ 전자 인증, ▲ 디지털 정부 및 마이데이터(MyData) 등을 포함하여,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정책·제도 등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경험 공유
- 온라인 상에서 제공되는 상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과 관련된 정보 교환 및 의견 공유
-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 다자 및 국제포럼에의 적극적 참여
-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업계별 자율규제(행동강령,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등) 개발을 장려

## 7 이해관계자의 참여 (제14.34조)

### ■ 「한국-싱가포르 디지털 경제 대화」를 개최하여 양국 간 디지털 경제의 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 노력 및 이니셔티브를 확대

- 동 대화에는 연구자, 학계, 산업계 및 그 밖의 관심있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장려

🔗 동 협정을 계기로, 한국-싱가포르 디지털 경제 대화의 운영 관련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 간 「한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대화 이행에 관한 MOU」를 체결

## V

### 부속서 나

- 한-싱가포르 FTA 제12.6조(예외) 및 제21.2조(일반적인 예외)에서 언급된 제14장의 명칭을 ‘전자상거래’에서 ‘디지털 경제’로 변경

## VI

### 부속서한

- 제14.6조(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와 관련하여,
  - 양 당사국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중대하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콘텐츠와 관련된 디지털제품에 대해,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 다만, 해당 조치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어서는 아니됨
  - 또한,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는 ‘내국민 대우’에 한정되며, ‘최혜국 대우’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